

2025년도 건설기술정책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검 토 보 고 서

I . 제 안 경 위

2025년도 건설기술정책관 (품질시험소 포함) 소관의 예산안은 2024년 11월 1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1월 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II . 일반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 현황

1. 총 괄

가. 세 입 예 산 안

(단위:백만원)

구 분		2024년도 본 예산(a)	2024년도 최종예산(b)	2025년도 예산안(c)	증 감 (c-b)	증 감 륜 (%)
총 계		1,940	3,958	2,411	△ 1,547	△ 39.1
일 반 회 계	건 설 기 술 정 책 관	1,297	3,315	1,620	△ 1,695	△ 51.1
	품 질 시 험 소	643	643	791	148	23.0

나. 세 출 예 산 안

(단위:백만원)

구 분		2024년도 본 예산(a)	2024년도 최종예산(b)	2025년도 예산안(c)	증 감 (c-b)	증 감 륜 (%)
계		4,904	7,317	7,322	5	0.07
일 반 회 계	건 설 기 술 정 책 관	3,398	5,811	5,782	△ 29	△ 0.5
	품 질 시 험 소	1,506	1,506	1,540	34	2.3

2. 회계별 예산 편성 현황

가. 세입예산안

(1) 일반회계

(단위:백만원)

구 분		2024년 도 본 예산	2024년 도 최종 예산	2025년 도 예 산 안	증 감	증 감 륜 (%)
총 계		1,940.6	3,958.0	2,410.9	△1,547.1	△39.1
건 설 기 술 정 책 관	계	1,297.6	3,315.0	1,619.6	△1,695.4	△51.1
	기타수수료	-	-	10.4	10.4	-
	건설기술심의 수수료	-	-	10.4	10.4	-
	그외수입	6.4	6.4	-	△6.4	△100.0
	건설기술심의 수수료	6.4	6.4	-	△6.4	△100.0
	기타과태료	81.5	81.5	82.0	0.5	0.6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과태료	81.5	81.5	82.0	0.5	0.6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수입 등	303.7	303.7	271.7	△32	△10.5
	지난년도수입	21.1	21.1	22.1	1	4.7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과태료 체납분	21.1	21.1	22.1	1	4.7
	지난년도 건설업 과징금, 과태료 수입 등	93.9	93.9	124.5	30.6	32.6
	증지수입	7.6	7.6	6.4	△1.2	△15.8
	일반건설업 등록신고 수수료	7.6	7.6	6.4	△1.2	△15.8
	과징금	565.1	565.1	322.9	△242.2	△42.9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징금 수입 등	565.1	565.1	322.9	△242.2	△42.9
	기타이자수입	96.5	96.5	1.8	△94.7	△98.1
	위험건축물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 반납이자	6.9	6.9	1.5	△5.4	△78.3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보조금 반납이자	87.9	87.9	-	△87.9	△100.0
	민간건축물 지진대응력 개선지원사업 보조금 반납이자	1.7	1.7	0.3	△1.4	△82.4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14.8	14.8	32.1	17.3	116.9
	위험건축물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 보조금 반납	7.3	7.3	30.2	22.9	313.7
	민간건축물 지진대응력 개선지원사업 보조금 반납	7.5	7.5	1.9	△5.6	△74.7
	국고보조금	107.0	107.0	745.7	638.7	596.9
	민간건축물 지진대응력 개선 지원	91.0	91.0	103.7	12.7	14.0
	지자체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비용 지원	16.0	16.0	10.0	△6	△37.5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	-	307.0	307.0	-
	주택 사면 재평가 및 실태 조사	-	-	325.0	325.0	-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	2,017.4	-	△2,017.4	△100.0
	국고보조금 반환	-	2,017.4	-	△2,017.4	△100.0

구 분		2024년 도 본 예산	2024년 도 최종 예산	2025년 도 예 산 안	증 감	증감률 (%)
품 질 시 험 소	계	643.0	643.0	791.3	148.3	23.1
	공유재산임대료	-	-	0.8	0.8	-
	청사 사용료 수입	-	-	0.8	0.8	-
	주차요금수입	8.9	8.9	12.2	3.3	37.1
	품질시험소 청사 부설주차장 수입	8.9	8.9	12.2	3.3	37.1
	기타사용료	0.7	0.7	-	△0.7	△100.0
	청사 사용료 수입	0.7	0.7	-	△0.7	△100.0
	증지수입	629.0	629.0	774.8	145.8	23.2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571.7	571.7	707.1	135.4	23.7
	택시미터 검정 수수료	1.8	1.8	1.8	0	0.0
	각종계량기 관련 수수료	55.5	55.5	65.9	10.4	18.7
	기타수수료	-	-	3.1	3.1	-
	수도미터 검사수수료 수입 등	-	-	3.1	3.1	-
	기타이자수입	-	-	0.4	0.4	-
	품질시험소 기타이자수입	-	-	0.4	0.4	-
	불용품매각대금	2.5	2.5	-	△2.5	△100.0
	공용차량 불용품 매각대금	2.5	2.5	-	△2.5	△100.0
	그외수입	1.9	1.9	-	△1.9	△100.0
	수도미터 검사 수수료 수입 등	1.9	1.9	-	△1.9	△100.0

나. 세 출 예 산

(1) 일반회계

(단위:백만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2024년 도 본예산	2024년 도 최종예산	2025년 도 예산안	증 감	증감률 (%)
총 계			4,904	7,317	7,322	5	0.1
건설 기 술 정 책 관	계		3,398	5,811	5,782	△29	△0.5
	소 계		1,273	907	1,489	582	64.2
	건설공사 설계수준 향상	건설기술심의회 운영	459	475	504	29	6.1
		건설기술심의회 운영	459	475	504	29	6.1
		건설기술 향상 및 우수건설관계자 시상	570	188	605	417	221.8
		건설기술 정보제공 및 직무교육	33	33	39	6	18.2
		서울특별시 건설상 시상	13	13	22	9	69.2
		기술용역 자체시행 지원	90	90	90	-	0.0
		계약금액조정 검증 프로그램 유지관리	52	52	55	3	5.8
		2040 서울 건설기술 기본계획 수립	-	-	200	200	-
		건설공사 사후평가 개선 및 활용방안 마련	-	-	199	199	-
		서울특별시 하자관리 지원시스템 구축	382	382	-	△382	△100.0
		스마트건설기술 BIM 적용지침 수립	244	244	380	136	55.7
		BIM 성과품 관리방안 마련	244	244	380	136	55.7
	건설정책의 효율성 제고	소 계	210	210	249	39	18.6
		건설정책 강화	210	210	249	39	18.6
		하도급 개선대책 수립 및 운영	58	58	63	5	8.6
		건설업 등록 및 처분 관리	24	24	24	0	0.0
		공정건설문화 정착	26	26	22	△4	△15.4
		건설업 빅데이터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102	102	140	38	37.3
	건축물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소 계	1,701	1,881	3,761	1,880	99.9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1,701	1,881	3,761	1,880	99.9
		민간건축공사장 및 안전취약 건축물 안전점검	70	70	115	45	64.3
		민간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지원	205	205	1,212	1,007	491.2
		노후 건축물 및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지원	1,000	1,000	800	△200	△20.0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시스템 운영	22	22	22	0	0.0
		민간건축물 지진대응력 개선 지원	124	124	141	17	13.7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	35	35	58	23	65.7

정책 사업		단위 사업	2024년 도 본 예산	2024년 도 최종 예산	2025년 도 예 산 안	증 감	증 감 륜 (%)
		지자체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비용 지원	16	16	10	△ 6	△ 37.5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정보화시스템 운영	229	229	253	24	10.5
		기 존 건 축 물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지원	-	-	500	500	-
		주택 사면 재 평가 및 실태 조사	-	-	650	650	-
		민간건설현장 동영상 기록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	180	-	△ 180	△ 100.0
		소 계	-	2,207	-	△ 2,207	△ 100.0
	재 무 활 동	보전지출	-	2,207	-	△ 2,207	△ 100.0
		국고보조금 반환	-	2,207	-	△ 2,207	△ 100.0
		소 계	214	224	283	59	26.3
	행 정 운 영 경 비	기본경비	214	224	283	59	26.3
		기본경비	214	224	283	59	26.3
		소 계	405	405	403	△ 2	△ 0.5
품 질 시 험 소	계		1,506	1,506	1,540	34	2.3
	건 설 공 사 품 질 수 준 향 상	소 계	1,101	1,101	1,137	36	3.3
		건설공사 품질관리 사업	1,101	1,101	1,137	36	3.3
		건설자재 품질시험	286	286	271	△ 15	△ 5.2
		품질시험장비 구입	9	9	563	554	6,155.6
		품질시험소 청사 유지관리	806	806	303	△ 503	△ 62.4
	행 정 운 영 경 비	소 계	405	405	403	△ 2	△ 0.5
		기본경비	405	405	403	△ 2	△ 0.5
		기본경비	405	405	403	△ 2	△ 0.5

(2) 정책사업별

건설기술정책관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세계 최고 수준의 안심·매력 건설도시 서울 구현』 전략목표의 효율적 달성을 위한 계속사업 22개 및 신규사업 3개에 66억 36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단위: 백만원)

정책사업 목표	2024년도 본예산	2024년도 최종예산	2025년도 예산안	증 감	증감률 (%)
계(25)	4,284	6,687	6,636	△51	△0.8
건설공사 수준 향상 및 기술역량 배양	1,273	907	1,489	582	64.2
사람중심의 건설환경 조성	210	592	249	△343	△57.9
건축물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안전 사각지대 해소	1,701	4,088	3,761	△327	△8.0
건설공사 및 계량기 품질수준 향상, 계량기 검사 신뢰도 확보	1,100	1,100	1,137	37	3.4

※ 성과지표 예산액은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예비비 등을 제외한 금액임

1) 건설공사 수준 향상 및 기술역량 배양

- 건설공사 설계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비로 건설기술심의회 운영 등 8개 사업(계속6, 신규2)에 14억 89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단위: 천원)

구 분	세부사업명	2024년도 본예산	2024년도 최종예산	2025년도 예산안	증 감	비고
	계(일반회계)	890,861	906,557	1,488,920	582,363	
1	건설기술심의회 운영	458,769	474,465	504,095	29,630	계속
2	건설기술 정보제공 및 직무교육	32,847	32,847	38,895	6,048	계속
3	서울특별시 건설상 시상	12,915	12,915	22,415	9,500	계속
4	기술옹역 자체시행 지원	90,000	90,000	90,000	0	계속
5	계약금액조정 검증 프로그램 유지관리	52,389	52,389	54,515	2,126	계속
6	2040 서울 건설기술 기본계획 수립	-	-	200,000	200,000	신규
7	건설공사 사후평가 개선 및 활용방안 마련	-	-	198,900	198,900	신규
8	BIM성과품 관리 방안 마련	243,941	243,941	380,100	136,159	계속

2) 사람중심의 건설환경 조성

- 건설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비로 하도급 개선대책 수립 및 운영 등 4개 사업(계속4)에 2억 49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단위: 천원)

구분	세부사업명	2024년도 본예산	2024년도 최종예산	2025년도 예산안	증 감	비고
	계(일반회계)	209,900	209,900	249,308	39,408	
1	하도급 개선대책 수립 및 운영	58,076	58,076	62,928	4,852	계속
2	건설업 등록 및 처분 관리	24,000	24,000	24,000	0	계속
3	공정건설문화 정착	25,500	25,500	22,000	-3,500	계속
4	건설업 빅데이터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102,324	102,324	140,380	38,056	계속

3) 건축물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안전 사각지대 해소

- 건축물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를 사업비로 민간건축공사장 및 안전취약 건축물 안전점검 등 10개 사업(계속9, 신규1)에 37억원 61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단위: 천원)

구분	세부사업명	2024년도 본예산	2024년도 최종예산	2025년도 예산안	증 감	비고
	계(일반회계)	1,701,489	1,701,489	3,761,251	2,059,762	
1	민간건축공사장 및 안전취약 건축물 안전점검	70,300	70,300	114,680	44,380	계속
2	민간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지원	205,250	205,250	1,212,250	1,007,000	계속
3	노후 건축물 및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지원	1,000,000	1,000,000	800,000	-200,000	계속
4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시스템 운영	22,278	22,278	22,278	0	계속
5	민간건축물 지진대응력 개선 지원	123,850	123,850	140,965	17,115	계속
6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	35,000	35,000	58,000	23,000	계속
7	지자체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비용 지원	16,000	16,000	10,000	-6,000	계속
8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정보화시스템 운영	228,811	228,811	253,078	24,267	계속
9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	-	500,000	500,000	계속

구분	세부사업명	2024년도 본예산	2024년도 최종예산	2025년도 예산안	증 감	비고
10	(신규)주택사면 재평가 및 실태조사	-	-	650,000	650,000	신규

4) 건설공사 및 계량기 품질수준 향상, 계량기 검사 신뢰도 확보

-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건설자재 품질시험 등 3개 사업(계속3)에 11억 37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단위: 천원)

구분	세부사업명	2024년도 본예산	2024년도 최종예산	2025년도 예산안	증 감	비고
	계(일반회계)	1,100,424	1,100,424	1,136,770	36,346	
1	건설자재 품질시험	285,345	285,345	270,691	-14,654	계속
2	품질시험장비 구입	8,580	8,580	562,570	553,990	계속
3	품질시험소 청사 유지관리	806,499	806,499	303,509	-502,990	계속

5) 기타 일반예산 관련

- 건설기술정책관은 행정운영경비 6억 85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법정경비 및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에 따라 편성한 것임.

(단위: 천원)

구분	세부사업명	2024년도 본예산	2024년도 최종예산	2025년도 예산안	증 감	비고
일반예산(행정운영경비)		619,449	629,049	685,396	56,347	
1	기본경비(일반회계, 기술심사담당관)	130,506	140,106	188,653	48,547	계속
2	기본경비(일반회계, 건설혁신담당관)	56,251	56,251	61,692	5,441	계속
3	기본경비(일반회계, 지역건축안전센터)	27,530	27,530	31,711	4,181	계속
4	기본경비(일반회계, 품질시험소)	405,162	405,162	403,340	-1,822	계속

Ⅲ. 분야별 세부내용

가. 세입예산안

1) 일반회계

- 건설기술정책관 소관(품질시험소 포함) 세입예산안은 모두 일반회계임.

【 건설기술정책관 】

세입예산안은 2024년도 대비 51.1%인 16억9천5만원 감소한 16억2천만원임.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 기타수수료
 - 건설기술심의 수수료 1천만원
- 지난년도수입
 -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과태료 체납분 2천2백만원
 - 지난년도 건설업 과징금, 과태료 수입 등 1억2천5백만원
- 기타과태료
 -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과태료 8천2백만원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수입 등 2억7천2백만원
- 중지수입
 - 일반건설업 등록신고 수수료 6백만원
- 과징금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징금 수입 등 3억2천3백만원
- 기타이자수입
 - 위험건축물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 등 반납이자 2백만원
- 시·도비보조금등 반환수입
 - 위험건축물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 보조금 반납 3천만원
 - 민간건축물 지진대응력 개선지원사업 보조금 반납 2백만원

○ 국고보조금

- | | |
|------------------------|----------|
| - 민간건축물 지진대응력 개선 지원 | 1억4백만원 |
| - 지자체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비용 지원 | 1천만원 |
| -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 3억7백만원 |
| - 주택사면 재평가 및 실태조사 | 3억2천5백만원 |

【 품질시험소 】

세입예산안은 2024년도 대비 23.1%인 1억4천8백이 증가한 7억9천1백만원임.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 공유재산임대료

- | | |
|-------------|------|
| - 청사 사용료 수입 | 1백만원 |
|-------------|------|

○ 주차요금수입

- | | |
|---------------------|--------|
| - 품질시험소 청사 부설주차장 수입 | 1천2백만원 |
|---------------------|--------|

○ 증지수입

- | | |
|-----------------|--------|
| -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 7억7백만원 |
| - 택시미터 검정 수수료 | 2백만원 |
| - 각종 계량기 관련 수수료 | 6천6백만원 |

○ 기타수수료

- | | |
|-------------------|------|
| - 수도미터 검사수수료 수입 등 | 3백만원 |
|-------------------|------|

○ 기타이자수입

- | | |
|----------------|--------|
| - 품질시험소 기타이자수입 | 0.4백만원 |
|----------------|--------|

나. 세출예산안

1) 일반회계

【 건설기술정책관 】

세출예산안은 2024년도 대비 0.5%인 2천9백만원 감소한 57억8천2백만원임.

사업별 주요내역을 보면

- 건설기술심의회 운영을 위한 예산은 2024년도 대비 6.1%인 2천9백만원 증가한 5억4백만원으로 그 내역은
 - 건설기술심의회 운영 5억4백만원
- 건설기술 향상 및 우수건설관계자 시상 관련 예산은 2024년도 대비 221.8%인 4억1천7백만원 증가한 6억5백만원으로 그 내역은
 - 건설기술 정보제공 및 직무교육 3천9백만원
 - 서울특별시 건설상 시상 2천2백만원
 - 기술용역 자체설계를 위한 설계도면 작성 지원 9천만원
 - 계약금액조정 검증 프로그램 유지관리 5천5백만원
 - 2040 서울 건설기술 기본계획 수립 2억원
 - 건설공사 사후평가 개선 및 활용방안 마련 1억9천9백만원
- 스마트건설기술 BIM 적용지침 수립 관련 예산은 2024년도 대비 55.7%인 1억3천6백만원 증가한 3억8천만원으로 그 내역은
 - BIM 성과품 관리방안 마련 3억8천만원
- 건설정책 강화를 위한 예산은 2024년도 대비 18.6%인 3천9백만원 증가한 2억4천9백만원으로 그 내역은
 - 하도급 개선대책 수립 및 운영 6천3백만원
 - 건설업 등록 및 처분 관리 2천4백만원
 - 공정건설문화 정책 2천2백만원
 - 건설업 빅데이터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1억4천만원

○ 민간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한 예산은 2024년도 대비 99.9%인 18억8천만원 증가한 37억6천1백만원으로 그 내역은

- 민간건축공사장 및 안전취약 건축물 안전점검 1억1천5백만원
- 민간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지원 12억1천2백만원
- 노후 건축물 및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지원 8억원
-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시스템 운영 2천2백만원
- 민간건축물 지진대응력 개선 지원 1억4천1백만원
-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 5천8백만원
- 지자체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비용 지원 1천만원
-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정보화시스템 운영 2억5천3백만원
-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5억원
- 주택사면 재평가 및 실태조사 6억5천만원

○ 기본경비는 2024년도 대비 26.3%인 5천9백만원 증가한 2억8천3백만원임.

【 품질시험소 】

세출예산안은 2024년도 대비 2.3%인 3천4백만원 증가한 15억4천만원임.

사업별 주요내역을 보면

○ 건설공사 품질관리 사업을 위한 예산은 2024년도 대비 3.3%인 3천6백만원 증가한 11억3천7백만원으로 그 내역은

- 건설자재 품질시험 2억7천1백만원
- 품질시험장비 구입 5억6천3백만원
- 품질시험소 청사 유지관리 3억3백만원

○ 기본경비는 2024년도 대비 0.5%인 2백만원 감소한 4억3백만원임.

IV. 검토의견

1. 예산 개요

1) 총괄

- 가) 세입 : 전년대비 39.1% 감소한 24억 11백만원
- 나) 세출 : 전년대비 0.07% 증가한 73억 22백만원임

2) 일반회계

【 건설기술정책관 】

- 가) 세입 : 전년대비 51.1% 감소한 16억 95백만원임
- 나) 세출 : 전년대비 0.5% 감소한 57억 82백만원임

【 품질시험소 】

- 가) 세입 : 전년대비 23% 증가한 7억 91백만원임
- 나) 세출 : 전년대비 2.3% 증가한 15억 40백만원임

- 2025회계연도 건설기술정책관(품질시험소 포함) 소관 예산안을 살펴보면, 세입은 전년대비 39.1% 감소한 24억 11백만원이고 세출은 전년대비 0.07% 증가한 73억 22백만원으로,
 - 세입의 주요 감소사유는 일반회계의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및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의 집행잔액인 국고보조금 20억 17백만원의 반환과 지난해 대비 과징금 수입 2억 42백만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는 등에 기인한 것임.
- 다음으로, 세출에서 행정운영경비를 제외한 최근 3년간 건설기술정책관 정책분야별 예산 변동추이(아래[표])를 살펴보면 지난해 최종예산 대비 약 99.2% 수준으로 편성되었음.

[표] 최근 3년간 건설기술정책관 정책사업목표별 예산 변동 추이

(단위: 백만원)

정책사업목표	2025년 예산안		2024년 예산		2023년 예산	
	예산액	구성비(%)	최종예산액	구성비(%)	최종예산액	구성비(%)
계	6,636	100.0	6,687	100.0	4,304	100.0
건설공사 수준 향상 및 기술역량 배양	1,489	22.4	907	13.6	744	17.3
사람중심의 건설환경 조성	249	3.8	592	8.9	452	10.5
건축물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안전 사각지대 해소	3,761	56.7	4,088	61.1	2,209	51.3
건설공사 및 계량기 품질수준 향상, 계량기 검사 신뢰도 확보	1,137	17.1	1,100	16.4	899	20.9

-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에 5억원이 재편성되고 ‘주택사면 재평가 및 실태조사’ 사업 6억 5천만원이 신규로 추가되는 등 총 15억 5천만원이 증가하고,
- 올해 7월 실시한 조직개편¹⁾으로 기존에 재난안전실 사업 중 ‘민간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 비용 지원’ 사업 10억원 등이 지역건축안전센터로 이관되어 증액되는 한편,
- 지난해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해 편성되었던 ‘지자체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비’ 집행잔액 852만원과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 집행잔액 21억 99백만원이 '24.6월 추경을 통해 전액 반환완료 되었고 금회에는 반환금 계상이 없음.

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③ 건설기술정책관 밑에 기술심사담당관·건설혁신담당관·지역건축안전센터를 두고, 기술심사담당관·건설혁신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2. 분야별 검토 의견

가. 세입 예산안

(단위:백만원)

구 분		2024년 도 본 예산	2024년 도 최종 예산	2025년 도 예산 안	증 감	증 감 률 (%)
총 계		1,940.6	3,958.0	2,410.9	△1,547.1	△39.1
건설 기 술 정 책 관	계	1,297.6	3,315.0	1,619.6	△1,695.4	△51.1
	기타수수료	-	-	10.4	10.4	-
	건설기술심의 수수료	-	-	10.4	10.4	-
	그외수입	6.4	6.4	-	△6.4	△100.0
	건설기술심의 수수료	6.4	6.4	-	△6.4	△100.0
	기타과태료	81.5	81.5	82.0	0.5	0.6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과태료	81.5	81.5	82.0	0.5	0.6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수입 등	303.7	303.7	271.7	△32	△10.5
	지난년도수입	21.1	21.1	22.1	1	4.7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과태료 체납분	21.1	21.1	22.1	1	4.7
	지난년도 건설업 과징금, 과태료 수입 등	93.9	93.9	124.5	30.6	32.6
	증지수입	7.6	7.6	6.4	△1.2	△15.8
	일반건설업 등록신고 수수료	7.6	7.6	6.4	△1.2	△15.8
	과징금	565.1	565.1	322.9	△242.2	△42.9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징금 수입 등	565.1	565.1	322.9	△242.2	△42.9
	기타이자수입	96.5	96.5	1.8	△94.7	△98.1
	위험건축물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 반납이자	6.9	6.9	1.5	△5.4	△78.3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보조금 반납이자	87.9	87.9	-	△87.9	△100.0
	민간건축물 지진대응력 개선지원사업 보조금 반납이자	1.7	1.7	0.3	△1.4	△82.4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14.8	14.8	32.1	17.3	116.9
	위험건축물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 보조금 반납	7.3	7.3	30.2	22.9	313.7
	민간건축물 지진대응력 개선지원사업 보조금 반납	7.5	7.5	1.9	△5.6	△74.7
	국고보조금	107.0	107.0	745.7	638.7	596.9
	민간건축물 지진대응력 개선 지원	91.0	91.0	103.7	12.7	14.0
	지자체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비용 지원	16.0	16.0	10.0	△6	△37.5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	-	307.0	307.0	-
	주택 사면 재평가 및 실태 조사	-	-	325.0	325.0	-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	2,017.4	-	△2,017.4	△100.0
	국고보조금 반환	-	2,017.4	-	△2,017.4	△100.0

구 분		2024년 도 본 예산	2024년 도 최종 예산	2025년 도 예 산 안	증 감	증감률 (%)
품 질 시 험 소	계	643.0	643.0	791.3	148.3	23.1
	공유재산임대료	-	-	0.8	0.8	-
	청사 사용료 수입	-	-	0.8	0.8	-
	주차요금수입	8.9	8.9	12.2	3.3	37.1
	품질시험소 청사 부설주차장 수입	8.9	8.9	12.2	3.3	37.1
	기타사용료	0.7	0.7	-	△0.7	△100.0
	청사 사용료 수입	0.7	0.7	-	△0.7	△100.0
	증지수입	629.0	629.0	774.8	145.8	23.2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571.7	571.7	707.1	135.4	23.7
	택시미터 검정 수수료	1.8	1.8	1.8	0	0.0
	각종계량기 관련 수수료	55.5	55.5	65.9	10.4	18.7
	기타수수료	-	-	3.1	3.1	-
	수도미터 검사수수료 수입 등	-	-	3.1	3.1	-
	기타이자수입	-	-	0.4	0.4	-
	품질시험소 기타이자수입	-	-	0.4	0.4	-
	불용품매각대금	2.5	2.5	-	△2.5	△100.0
	공용차량 불용품 매각대금	2.5	2.5	-	△2.5	△100.0
	그외수입	1.9	1.9	-	△1.9	△100.0
	수도미터 검사 수수료 수입 등	1.9	1.9	-	△1.9	△100.0

1) 『건설기술정책관』

(1) 건설기술심의 수수료

- 건설기술심의 수수료는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제15조²⁾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2조³⁾에 따라 건설

2)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제15조(심의수수료) ① 시장은 법 제79조에 따라 위원회에 건설공사 설계 등의 심의를 요청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징수하되, 수수료의 금액은 심의 내용 및 실 소요비용을 고려하여 "별표 1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3)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제42조(심의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 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심의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4와 같으며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공사 설계 등의 심의를 요청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 금회 예산안에서는 세입과목을 기존 ‘그외수입’에서 ‘기타수수료’로 변경⁴⁾하고 전년 대비 400만원(38.4%)이 증가한 1,04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최근 3년간 평균 건설기술심의 요청 횟수(13건)에 건당 부과수수료 80만원을 곱하여 산정한 것임.

[표] 건설기술심의 수수료 산출근거

□ 2025 세입추계

10,400천원

○ 최근 3년간(2022~2024) 평균 징수액은 10,439천원이며,

2025년 수수료 부과대상 설계·진단용역은 서울교통공사, 서울도시주택도시공사 등

약13건 예상 = 800천원 × 13회 = 10,400천원

[표] 수수료 부과대상 건설기술심의 연도별 개최 횟수

수수료	2020	2021	2022	2023	2024(전망)
800천원	7건	10건	8건	21건	10건

- 세입과목의 변경은 해당 수수료가 정상적 수입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의 ‘기타수입’ 항목에서 ‘기타수수료’로 변경한 것임.

4)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

[별표8]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과목구분				설 정
장	관	항	목	
200	세	외수입		
		210	경상적 세외수입	
			213 수수료수입	
			213-05 기타 수수료	1. 타과목에 속하지 않는 수수료수입
		220	임시적세외수입	
			224 기타수입	
			224-07 그외수입	1. 기타 타과목에 속하지 않는 수입

(2)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징금 수입 등

- 동 세입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⁵⁾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⁶⁾에 따라 위반행위를 한 건설사업자에게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금회 전년 대비 2억 4,220만원(△42.9%)이 감소한 3억 2,291만원을 편성하였음.
- 이는 '24년 전망액을 포함한 최근 5개년('20년~'24년, 최대·최소 제외) 평균 부과액에 평균 징수율을 반영하여 추계([표] 참조) 함에 따른 것으로,
 - 최근 5년간 부과액별 징수 현황을 살펴보면([표] 참조) 평균 징수율이 81%에 머무르고 있는바, 과징금 부과에 그치지 말고 미납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징수에 대한 보다 철저한 추적 관리가 요구된다 하겠음.

[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징금 수입 산출근거

□ 2025 세입추계	32,291만원
○ 최대·최소 제외 5년 평균 부과액 412,412천원(354,652천원+436,746천원+445,837천원)/3 × 최대·최소 제외 5년 평균 징수율 78.3%(88.7%+75.4%+70.9%)/3 = 32,291만원	

5)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영업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사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 11. (생략)

6)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기준 등) ①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표] '20년~'24년 과징금 부과액 및 징수율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전망)	5년 평균
부과액	129,534	354,652	1,281,922	436,746	445,837	529,783
전년대비 부과액 증감율	94.9%	173.7%	261.5%	-69.7%	70.9%	93.26
징수율	100%	88.7%	75.4%	67.7%	70.9%	81%

(3) 민간건축물 지진대응력 개선 지원 외 3개 (국고보조금 사업)

- ‘국고보조금’은 「건축법」 제87조의27)에 따라 서울시에 설치·운영 중인 지역건축안전센터에 중앙정부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8)에 근거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으로, 금회 전년 대비 6억 3,870만원(596.9%)이 증가한 7억 4,570만원을 편성([표] 참조)하였음.

- 7) 「건축법」 제87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21조, 제22조, 제27조 및 제87조에 따른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확인·검토·심사 및 점검
 - 1의2. 제11조,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업무
 2. 제25조에 따른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감독
 3. 삭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시·도
 2. 인구 50만명 이상 시·군·구
 3.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건축허가 면적(직전 5년 동안의 연평균 건축허가 면적을 말한다) 또는 노후건축물 비율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상위 3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인구 50만명 미만 시·군·구
- 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보조금 예산의 통지)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한 보조금 예산안이 국회에서 심의·확정된 후에는 그 확정된 금액 및 내역을 사업별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표] '24~25년 건설기술정책관 국고보조금 편성 내역

담당과	사업명	중앙부서	국고보조금(천원)	
			'24년도 최종예산	'25년도 예산안
지역건축 안전센터	민간건축물 지진대응력 개선 지원	행정안전부	91,000	103,677
	지자체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비용 지원	국토교통부	16,000	10,000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국토교통부	-	307,000
	주택사면 재평가 및 실태조사	행정안전부	-	325,000
합 계			107,000	745,677

- 국고보조금이 증가한 주요사유는 지난해 수요가 없어 일시적으로 중단됐던,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이 재개되고 ‘주택사면 재평가 및 실태조사’ 사업 보조금이 신규로 지원 편성됨에 따른 것으로,
 - 이 중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의 경우 자치구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24년 신청수요가 없어 일시적으로 사업이 중단되었다가 다시 재개되는 사업’이기는 하나,
 - 수요가 한건도 없었다는 것은 홍보가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되는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대시민 홍보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1) 『품질시험소』

(1)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외 2개 증지수입

- 동 증지수입은 품질시험소의 ‘건설공사 품질점검 수수료’⁹⁾, ‘택시미터검정 수수료’¹⁰⁾, ‘각종 계량기 검사 수수료’¹¹⁾ 수입에 해당하는 것으로, 금회 전년 대비 1억 4,458만원(23.2%) 이 증가한 7억 7,480만원을 편성하였음.
- 주요 증액 사유는 건설공사 품질점검 수수료가 전 년에 비해 1억 3,540만원(23.7%) 증가한 7억 717만원으로 편성됨에 따른 것으로,
 - 이는 동 수수료와 관련한 최근 3년간 건설공사 품질점검 평균치에 따른 추계액 2억 337만원과 최근 5년간 건설자재 품질시험 평균치(최대·최소 제외) 추계액 5억 380만원의 합계를 적용한 것임([표] 참조).

9)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 기준) ③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 등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10)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종류 및 금액)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무 및 그 금액은 별표와 같다.

[별표] 수수료의 징수대상사무 및 금액(제3조 관련)

자. 택시미터 수리검정 수수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제3항 및 별지 제6호서식·제7호서식

수수료 징수대상사무	단위	금 액
1) 택시미터 정치검정 수수료	1대	2,400원
2) 택시미터 주행검정 수수료: 기본검정료와 거리검정료의 합계 금액으로 징수한다.		
- 기본검정료(접수, 차량유도, 신청서 확인 및 안내, 봉인 등)	1대	2,800원
- 거리검정료(주행 검정거리가 매 1km초과 시 마다) ※ 단, 1km미만은 1km초과 거리검정료를 징수한다.	1대	600원

11) 「계량에 관한 법률」 제67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 다만, 최근의 건설경기와 점검대상 공사현장이 감소추세([표] 참조)임을 고려할 때, 실 세입이 감소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가급적 보수적으로 추계할 필요도 있어 보임.

[표] 최근 5년간 연도별 건설공사 품질점검 건수

(단위 : 건)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전망)
품질점검	223	200	196	179	162
적절성 확인	125	99	103	92	86
이행 확인	98	101	93	87	76

[표] 최근 5년간 연도별 건설자재 품질시험 건수

(단위 : 건)

구 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비 고
건 수	1,663	1,501	1,696	1,857	1,683	'20, '22, '24년 평균≒1,680건

[표] 건설공사 품질점검 수수료 수입 산출근거

□ 2025 세입추계 ————— 70,717만원

- 건설공사 품질점검 수수료 203,377천원 + 건설자재 품질시험 수수료 503,801천원
= 707,178천원

1) 건설공사 품질점검 수수료 : 203,377천원

-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 162,549천원 +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 40,828천원 = 203,377천원

- ▶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 3개년 평균치 사용 = 94개소

⇒ 94건 × 1,729,250원 = 162,549,500원

- ▶ 품질시험계획의 이행확인 : 감소 추세 반영하여, 2개년 감소율 평균치 10% 적용

⇒ 69건 × 591,710원 = 40,827,990원

2) 건설자재 품질시험 수수료 : 503,801천원

- 연평균 품질시험 건수 1,680건 × 건당 수수료 299,882원 = 503,801천원

- ▶ 연평균 품질시험 건수 : 1,680건

⇒ '20~'24년 기간 중 최소·최대를 제외한 3개년 평균 품질시험 건수로 산출

- ▶ '25년 건당 수수료 : 299,882원/건

⇒ '24년도 건당 수수료 단가(290,865원/건)에 전년대비 평균 물가 상승률 ('23.8~'24.7. 기준 3.1%)을 적용하여 산출

⇒ 290,865원/건 × 1.031 = 299,882원/건

나. 세출 예산안

(단위:백만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2024년도 본예산	2024년도 최종예산	2025년도 예산안	증 감	증감률 (%)
총 계			4,904	7,317	7,322	5	0.1
건설기술정책관	계		3,398	5,811	5,782	△29	△0.5
	건설공사 설계수준 향상	소 계	1,273	907	1,489	582	64.2
		건설기술심의회 운영	459	475	504	29	6.1
		건설기술심의회 운영	459	475	504	29	6.1
		건설기술 향상 및 우수건설관계자 시상	570	188	605	417	221.8
		건설기술 정보제공 및 직무교육	33	33	39	6	18.2
		서울특별시 건설상 시상	13	13	22	9	69.2
		기술용역 자체시행 지원	90	90	90	-	0.0
		계약금액조정 검증 프로그램 유지관리	52	52	55	3	5.8
		2040 서울 건설기술 기본계획 수립	-	-	200	200	-
		건설공사 사후평가 개선 및 활용방안 마련	-	-	199	199	-
		서울특별시 하자관리 지원시스템 구축	382	382	-	△382	△100.0
		스마트건설기술 BIM 적용지침 수립	244	244	380	136	55.7
		BIM 성과품 관리방안 마련	244	244	380	136	55.7
	건설정책의 효율성 제고	소 계	210	210	249	39	18.6
		건설정책 강화	210	210	249	39	18.6
		하도급 개선대책 수립 및 운영	58	58	63	5	8.6
		건설업 등록 및 처분 관리	24	24	24	0	0.0
		공정건설문화 정착	26	26	22	△4	△15.4
		건설업 빅데이터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102	102	140	38	37.3
	건축물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소 계	1,701	1,881	3,761	1,880	99.9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1,701	1,881	3,761	1,880	99.9
		민간건축공사장 및 안전취약 건축물 안전점검	70	70	115	45	64.3
		민간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지원	205	205	1,212	1,007	491.2
		노후 건축물 및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지원	1,000	1,000	800	△200	△20.0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시스템 운영	22	22	22	0	0.0
		민간건축물 지진대응력 개선 지원	124	124	141	17	13.7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	35	35	58	23	65.7

정책 사업		단위 사업	2024년도 본예산	2024년도 최종예산	2025년도 예산안	증 감	증감률 (%)
		지자체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비용 지원	16	16	10	△6	△37.5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정보화시스템 운영	229	229	253	24	10.5
		기존 건축물 화재 안전성능보강 지원	-	-	500	500	-
		주택사면 재평가 및 실태조사	-	-	650	650	-
		민간건설현장 동영상 기록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	180	-	△180	△100.0
	재무활동	소 계	-	2,207	-	△2,207	△100.0
		보전지출	-	2,207	-	△2,207	△100.0
		국고보조금 반환	-	2,207	-	△2,207	△100.0
	행정 운영경비	소 계	214	224	283	59	26.3
		기본경비	214	224	283	59	26.3
		기본경비	214	224	283	59	26.3
품질시험소	계		1,506	1,506	1,540	34	2.3
	건설공사 품질수준 향상	소 계	1,101	1,101	1,137	36	3.3
		건설공사 품질관리 사업	1,101	1,101	1,137	36	3.3
		건설자재 품질시험	286	286	271	△15	△5.2
		품질시험장비 구입	9	9	563	554	6,155.6
		품질시험소 청사 유지관리	806	806	303	△503	△62.4
	행정 운영경비	소 계	405	405	403	△2	△0.5
		기본경비	405	405	403	△2	△0.5
		기본경비	405	405	403	△2	△0.5

1) 『건설기술정책관』

(1) 2040 서울 건설기술 기본계획 수립(사업별설명서 P.43)

○ 동 사업은 서울시의 공공 인프라와 민간 건설사업이 지향할 가치 및 건설정책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으로 금회 신규로 2억원을 편성하였음.

○ 서울시는 올해 7월 건설기술정책관¹²⁾을 신설하면서 급변하는

12)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규칙 제4641호, 2024. 6. 28., 일부개정]

- 제19조에 제3항, 제5항 및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건설기술정책관 밑에 기술심사담당관·건설혁신담당관·지역건축안전센터를 두고, 기술

건설산업에 대응하고자 '25년부터 '26년까지 총 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서울연구원 위탁사업¹³⁾으로 장기적인 서울형 건설기술 기본전략 수립을 계획하고 있으며,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①스마트 건설기술, 디지털 트윈 등의 활용방안, ②기후변화와 노후화 대응 방안, ③건설산업 활성화 및 중대재해 예방 정책 등([표] 참조) 서울시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들을 포함하고 있어 동 사업의 필요성은 공감할만하다 하겠음.

[표] 2040 서울 건설기술 기본계획 수립 과업지시서 주요 내용

구 분	과업 내용
가. 정책 및 연구 사례 분석	- 국내외 건설기술 관련 법제도 및 주요 계획(건설기술진흥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검토. - 스마트 건설기술, 디지털 트윈, BIM 등의 활용방안 도출.
나. 국내외 사례 분석	- 국내외 주요 도시의 건설기술 정책 사례 조사. - 해외 사례와 서울시 정책 비교를 통한 적용 가능성 도출.
다. 공공 인프라 관리 현황 분석	- 기후변화 및 노후화 대응 방안 마련. - 시민 설문조사와 전문가 협업을 통한 실태 분석.
라. 정책환경 변화 영향 분석	- 사회경제적 변화, 기술 발전(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에 따른 과제 도출. - 고층화·지하화 등 도시공간 변화 추세 분석.
마. 미래 정책 방향	- 스마트 건설기술 기반 탄소중립 및 안전 인프라 구축. - 건설 산업 활성화 및 중대재해 예방 정책.
바. 추진과제 실현계획	- 분야별 과제 우선순위 설정 및 중장기 로드맵 수립. - 단계별 추진계획 및 실행 체계 제시.

심사담당관·건설혁신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13) '10월 학술용역심의회 심의결과 알림' 창의행정담당관-(2024.10.25.)

- 서울연구원은 서울시 시정에 대한 기존 연구사례를 바탕으로 방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건설기술정책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 성과를 도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서울연구원 위탁사업으로 추진

- 다만, 학술용역 심의 결과¹⁴⁾ 즉, 용역비를 당초 3억원에서 2억 62백만원으로 재산정하도록 조건을 부여하였으나 이미 예산 및 사업별 설명서가 확정되어 의회에 제출된 이후라서 금회 총사업비가 3억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 차년도 잔여 예산편성 시 총사업비를 2억 62백만원으로 조정해야 할 것이며,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2) 건설공사 사후평가 개선 및 활용방안 마련(사업별설명서 P.47)

- 동 사업은 서울시 대형 건설공사에 대한 사후평가가 발주부서의 법령 미숙지 및 예산 미편성 등으로 인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어 사후평가 결과의 효과적 활용 및 법령준수 등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금회 신규로 1억 9,890만원을 편성하였음.
- 「건설기술진흥법」 제52조¹⁵⁾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¹⁶⁾에 따

14) '2040 서울 건설기술 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 심의의견 반영결과' 건설기술정책관(2024.10.31.)

- 반영결과 : ○ 용역비 재산정 : 300백만원 → 262백만원
○ 과업내용서 보완

15) 「건설기술진흥법」 제52조(건설공사의 사후평가) ① 발주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공사 내용 및 효과를 조사·분석하여 사후평가를 하고 사후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⑥ (생략)

16)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6조(건설공사의 사후평가)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총공사비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특성상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사후평가서(이하 “사후평가서”라 한다)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② 발주청은 사후평가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용역평가 및 시공평가와 제78조제1항에 따른 준공보고서를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다만, 총공사비가

르면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가 완료되면 발주부서는 공사내용 및 효과를 조사·분석하는 등 사후평가를 해야 하고 500억원 이상일 경우는 공사 완료 후의 실제 수요 및 공사 효과 등을 추가로 평가해야 하는데,

- 서울시의 경우 다수의 미이행 사례('24.11월 기준 28건)¹⁷⁾가 발견되고 있음.

[표] 28건 중 최근 3년간 사후평가 대상 사업의 사후평가 이행 여부 현황

연번	공사명	총공사비 (억원)	준공일	사후평가 이행여부	비고
1	율곡로 창경궁앞 도로구조개선공사	1,008	22.12.	미이행	
2	올림픽대교 남단IC 연결램프 구조개선공사	614	23.1.	미이행	
3	제2자유로 종점부(난지도길) 입체화 공사	660	23.5.	미이행	
4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	8,524	22.5.	미이행	
5	별내선(8호선연장) 건설사업	5,484	24.8.	미이행	

- 따라서 동 사업을 통해 市가 발주한 건설공사의 사후평가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천호대로 확장공사’ 등 일부 완료공사를 대상으로 시범적용¹⁸⁾ 함으로써 사업의 적용성과 효과성을 검증할 계획인바, 긍정적으로 평가됨.

5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1. 예상 공사비 및 공사기간과 실제로 투입된 공사비 및 공사기간의 비교·분석
2. 공사 기획 시 예측한 수요 및 기대효과와 공사 완료 후의 실제 수요 및 공사효과의 비교·분석
3. 해당 공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 주민의 호응도 및 사용자의 만족도
5. 그 밖에 발주청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7) ‘건설공사 사후평가 이행 협조 요청 및 지원사업 안내’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4664, 2024.11.12.)

3. 이와 관련하여 발주청의 건설공사 사후평가 미이행 현황을 송부해 드리니, 조속한 시일 내에 사후평가가 완료될 수 있도록 이행계획서를 2024.11.15.(금)까지 사후평가 전문관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설공사 사후평가센터)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천호대로 확장공사’와 ‘구리암사대교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추진계획 중

- 다만, 사후평가 제도가 오래전부터 시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발주부서의 평가 미이행 등 부실 행정으로 사후평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대형사업들의 시행착오 최소화에 대한 개선 기회를 상당 부분 상실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시정되어야 할 것임.

(3) BIM 성과품 관리방안 마련(사업별설명서 P.50)

- 동 사업은 스마트 건설의 핵심기술인 BIM¹⁹⁾ 데이터의 통합 관리를 목적으로 체계적인 관리방안과 시스템 구축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전년 대비 1억 3,616만원(56%) 증가한 3억 8,010만원을 편성하였음.
- 동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18.10월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을 발표한 후 '20.12월 국토교통부 '건설산업 BIM 기본지침'을 통해 발주처(지자체)가 사업유형 및 특성에 맞는 'BIM 적용 지침'을 수립하도록 의무화²⁰⁾하였고, '22.7월 국토교통부 '건

19) **건설정보모델링(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이란 시설물의 생애주기 동안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3차원 모델 기반으로 통합하여 건설정보와 절차를 표준화된 방식으로 상호 연계하고 디지털 협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디지털 전환 체계

20) **건설산업 BIM 기본지침**(국토교통부, '20.12.)

제2장 BIM 적용절차 및 기준 중 2.3. 성과품 관리

(1) BIM 성과품 관리 시스템 개요

- 설계 및 시공단계 종료 후 최종 발주처에 납품된 BIM 성과품을 체계적으로 저장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이를 통해 BIM 데이터를 추출 및 가공하여 BIM 관련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있어야 한다.

(2) BIM 성과품 관리 시스템 마련 및 운영

- 각 발주처는 납품된 BIM 성과품 일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 자체 BIM 성과품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 그렇지 않을 경우 기존 성과품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며, 자체 BIM 성과품 관리 시스템 마련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및 인력(조직)을 확보하여 조기에 구축 및 운영해야 한다.

설산업 BIM 시행지침'이 수립됨에 따라,

- 서울시는 후속 조치로 '서울시 BIM 적용지침 수립용역'을 추진('23.4월~'24.10월)하였고,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토교통부의 '건설산업 BIM 기본지침'에 따라 'BIM성과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소요 비용을 금회 편성한 것임.

[표] BIM 지침 수립단계(국토부 지침)

국 토 교 통 부		발주처 (지자체)	
BIM 기본지침	⇒	BIM 시행지침	⇒
건설산업 BIM 최상위 지침		발주자, 설계사, 시공사 적용 세부기준	
(2020년 수립)		(2022년 수립)	
		분야별 적용지침	⇒
		도로, 철도, 건축 등 분야별 세부적용지침	
		(2023~2024)	
		분야별 실무요령	
		도로, 철도, 건축 등 분야별 요령, 해설서	
		(2023~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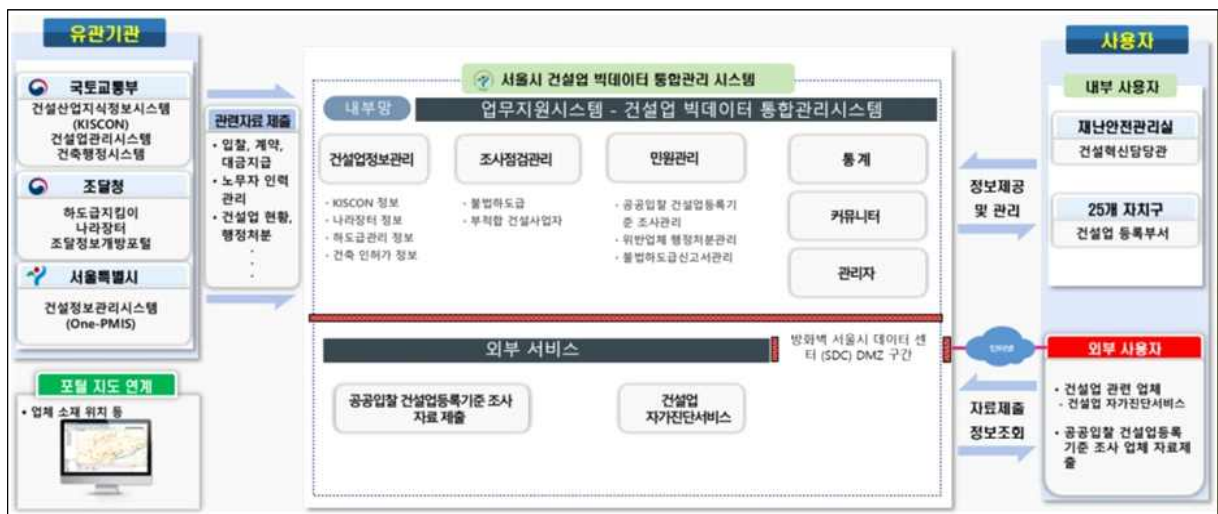
- 서울시는 선행 용역을 통해 도로 및 철도, 건축 분야에서 전면 BIM 설계가 시행 중인 한국도로공사, 철도공단 등 공공기관 사례를 바탕으로 서울시 BIM적용지침을 마련하였는바,
- 금회, 'BIM 성과품 관리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 각 분야별 (구조, 건축, 기계, 전기, 토목, 조정 등)성과품이 '서울시 BIM 적용지침'에 부합하게 이루어지도록 우선적으로 발주부서들을 철저하게 감독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BIM 성과품 관리 시스템'에 정확한 BIM 데이터가 통합 관리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임.

(4) 건설업 빅데이터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사업별설명서 P.70)

- 동 사업은 각 기관에서 관리하는 건설업 정보 및 불법하도급

건설업체 등 건설업 전반에 대한 빅데이터를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을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전년 대비 3,806만원이 증가(37.2%)한 1억 4,038만원을 편성하였음.

- 서울시는 '23.11월에 구축한 '건설업 빅데이터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유관기관 시스템(나라장터, KISCON, 하도급지킴이 등)과의 연계 및 데이터 기반 예측 모델([그림] 참조) 등을 활용하여 관리대상 업체(14,117개) 중 부적합 건설업체와 불법 하도급 가능 업체를 조기에 감지하여 관리하고 있음.



[그림] 시스템 구성도

- 동 시스템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이 금년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인 운영과 유지관리를 담당할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금회 시스템 운영예산을 편성한 것임.

(5) 민간건축공사장 및 안전취약 건축물 안전점검(사업별설명서 P.75)

- 동 사업은 민간건축공사장과 재난취약시설물 등에 대해 민간 전문가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재난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으로, 전년 대비 4,438만원이 증가(63.1%)한 1억 1,46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주요 증가 사유는 민간공사장의 하도급 지원을 위해 신규로 구성한 ‘민간공사장 하도급계약 자문단’²¹⁾ 사무관리비 850만원과 안전점검 확대에 따른 안전점검 수당 증가비 1,388만원, 그리고 시공품질 점검을 위한 계측장비(철근탐지기)([표] 참조) 구매비용 2,200만원을 편성함에 따른 것임.

[표] 계측장비(철근 탐지기) 예시

Ferroskan PS300 및 소프트웨어 등	철근 위치탐색
  B12 2.6 12V 배터리 소형 12V 2.6 Ah 이온 배터리	  
 PROFIS 탐지 오피스 철근 콘크리트 스캐너와 X-Scan 감지 시스템의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용 소프트웨어	

- 이 중 계측장비 중 하나인 철근 탐지기를 금회 신규 구매하고 있는데 이는 서울시 지역건축안전센터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점검 장비(디지털 테오도라이트, 슈미트 해머, 레이저 거리측정기, 열화상 카메라) 중 필수 비파괴검사 장비인 철근 탐사기

21) ‘민간공사장 하도급계약 자문단’ 사업 개요

- 구 성: 위원장 포함 12명
 - 위원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 위 원: 공정거래 관련 변호사(3), 건축 관련 시공기술사(4) 건설업체 또는 건설협회 경력자(3), 관련 공무원(1)
- 자문내용
 - 하도급 자격 적정여부(건산법 제29조, 영제31조)
 - 하도급계약 금액의 적정여부(건산법 제31조, 영제34조 제1항)
 -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적정여부(건산법 제25조 제3항)

는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임.

- 이처럼 「건축법」 22)에 따라 건축물의 착공신고, 사용승인, 현장 조사 및 검사 등의 안전점검 및 진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지역건축안전센터가 기본적인 철근탐지 계측장비 등도 갖추지 못하고 단순한 육안 점검에만 의존해 왔다는 점은 센터의 역할과 점검의 신뢰성을 의심케 하는 것이라 하겠음.
- 따라서,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정밀안전점검에 준하는 과업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조속히 완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로서의 위상과 신뢰를 갖추어야 할 것임.

[표] 서울시 지역건축안전센터 장비 보유 현황

	
▲디지털 데오도라이트 : 수평 및 수직 각도를 디지털 방식으로 측정 표시	▲슈미트 해머 : 콘크리트와 암석 등의 재료의 표면 강도를 측정
	
▲레이저 거리측정기 : 레이저를 이용한 거리 측정기	▲열화상 카메라 : 벽체의 전기 배선, 열누출 등을 적외선으로 감지

22) 「건축법」 제87조의2에 명시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 영역

-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확인·검토·심사 및 점검 업무
 - 제21조(착공신고 등),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 제27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 제87조(보고와 검사 등)
- 허가 및 신고 업무
 - 제11조(건축허가), 제14조(건축신고) 및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감독
 -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
 -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6) 민간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지원(사업별설명서 P.79)

- 동 사업은 주택건축 분야에서 재난취약시설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선제적인 예방관리를 위해 정밀안전진단 및 응급조치 등의 비용을 민간에 지원하려는 것으로, 전년 대비 10억 7백만원이 증가(490.6%)한 12억 1,225만원을 편성하였음.
- 주요 증가 사유는 대상지 선정위원회²³⁾ 수당 7백만원과 민간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 지원비 10억원으로, 이는 올해 7월 실시한 조직개편에서 재난안전실(중대재해예방과)이 기추진([표] 참조)하던 민간 안전취약시설 지원사업을 건설기술정책관(지역건축안전센터)으로 이관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으나,

[표] 최근 2년간 재난안전실 민간 안전취약시설 집행 실적

구 분	2022년	2023년	평 균
개 소	21	31	26
집행액(백만원)	1,113	1,160	1,136

- 동 사업의 세부 사업인 ‘소규모 노후건축물 보수보강 비용 지원’([표] 참조)의 경우는 최대 3천만원의 제한된 지원금과 자부담금 비율(市:區:소유자=40:40:20)로 운영되고 있어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시민의 경우 사업 참여를 기피할 수도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지원방안이 강구되어져야 할 필요가

23) ‘대상지 선정위원회’ 개요

- 근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구성내역 : 분야별 외부전문가(서울시건축안전전문단) 4명 이상
- 활동내역 : 자치구 수요조사 후 신청건에 대한 사업대상지 전문가 현장조사 및 선정위원회 심사수당
※’24년 재난안전실 민간 취약시설 자치구 신청 144건 중 34건 지원
- 산출근거 : 346,000원x1인x40건x0.5(1일2건) ≒ 7,000,000원

있어 보임.

[표] '소규모 노후건축물 보수보강 비용 지원' 사업개요

구 성	내 용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제2조의1(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시장은 자치구에서 실시하는 건축물관리 지원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원대상	■ 소규모 노후건축물 + 부속 옹벽·석축 : 민간시설에 한함 다음 조건 모두 충족 필요 ① 안전점검 등급이 미흡·불량 판정 ②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수행하고 구조보강 및 안전조치 방안 수립 후 지원
선정기준	공공성, 시급성, 적정성, 효과성
지원금액	■ '24년도 예산 1억원, 시·비·구·비·민간 매칭(한도 있음, 최대 3천만원) - 시:區:소유자 = 40:40:20 - 최대: 市 16백만원, 區 16백만원
보수주체	■ 건축물 소유자(민간자본보조)

(7)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별설명서 P.106)

- 동 사업은 민간 화재 취약 건축물의 화재 안전 성능보강을 위해 외장재 교체 등을 위한 공사비용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전년 대비 5억원이 증가한 5억원을 편성하였음.
- 동 사업은 국고보조금 매칭(국비:지방비 = 307백만원:193백만원) 사업으로 '19년 시범사업을 시작해서 '20년부터 '23년까지 자치구 수요조사를 통해 사업을 추진([표] 참조)하였으나, '24년은 신청 수요가 없어 일시적으로 사업이 중단되었고,
 - 올해 '25년 사업 재개를 위한 수요조사에서 총 45건([표] 참조)의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가내시 매칭액에 해당하는 23건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해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능 향상 효과가

기대된다 하겠음.

[표] '19~'25년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9년(시범)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예산 편성	합 계	10,173	249	770	1,360	8,138	예산미편성 (22년이월)	0	500(안)
	국 비	6,372	147	530	800	5,159	-	-	307(안)
	시 비	3,801	102	240	560	2,979	-	-	193
집행	합 계	6,334	107	770	662	4,670	125	-	미정
	국 비	4,027	63	530	380	2,984	70	-	미정
	시 비	2,307	44	240	282	1,686	55	-	미정

- 다만, 동 사업은 예산과목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금회 국고보조금 가내시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 하달된 공문²⁴⁾은 예산과목을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명시하고 있으며,
-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²⁵⁾에서도 “민간의 자본 형성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은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정의하고 있는바, 예산과목의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됨.

24) 2025년도 예산 가내시(안) 알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및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지원’ 건축안전과-7421(2024. 9. 13.)

○ '25년 예산액 : 1,933백만원(전국기준) (예산과목: 자치단체자본보조)

25)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

[별표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목그룹·편성목·통계목)

그룹	편 성 목	설 정 (통 계 목 포 함)
400	403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01. 자치단체자본보조 1. 지방자치단체에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조금 2.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조금

[표] '25년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수요조사 내역

연 번	자 치 구	건(동)	비 고
1	강동구	2	
2	강북구	1	신규대상 1건
3	강서구	8	신규대상 3건
4	광진구	4	신규대상 2건
5	구로구	1	
6	도봉구	1	신규대상 1건
7	동대문구	2	신규대상 1건
8	동작구	1	
9	성동구	1	
10	성북구	3	
11	양천구	6	신규대상 1건
12	영등포구	8	신규대상 1건
13	용산구	4	신규대상 3건
14	은평구	2	
15	종로구	1	신규대상 1건
합 계		45	총 신규대상 14건

(8) 주택사면 재평가 및 실태조사(사업별설명서 P.109)

- 동 사업은 주택사면 실태조사를 통해 관리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이에 따른 중장기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금회 신규로 6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음.
- 동 사업의 경우 '24년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으로 주택 인접 비탈면 관리기준이 완화²⁶⁾되고,

26)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급경사지 실태조사)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급경사지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과를 시장·

급경사지 실태조사 권한이 시장에게 부여되었으며,

- 행정안전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미등록 급경사지를 발굴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 단위 급경사지 실태조사’²⁷⁾(국고보조금 50%지원)를 추진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서울시는 금년 수요조사를 통해 1,300건의 미등록 급경사지를 발굴²⁸⁾하였으며, 이들 대상에 대한 재평가 및 실태조사 등을 수행코자 하는 것으로

- 주택과 같은 건축물에 인접한 비탈면이 붕괴될 경우, 토사가 건축물로 유입되어 인명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만큼 관리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치라 사료됨.

군수·구청장 및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새로이 파악된 급경사지가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 법에 따라 해당 급경사지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급경사지의 정의)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급경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미터[비탈면과 주택 등 건축물의 최단(最短) 거리가 3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3미터를 말한다] 이상이고, 경사도가 34도 이상이며, 길이가 20미터 이상인 인공 비탈면
2.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0미터 이상이고, 경사도가 34도 이상인 자연 비탈면
3. 그 밖에 관리기관이나 특별자치시장·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공 비탈면, 자연 비탈면 또는 산지

27) “24년 시·도별 급경사지 실태조사 대상지 수요조사”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4142(‘24.8.13.)

3. 우리부에서는 급경사지 신규 발굴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4년부터 국비를 지원 (50%)하여 실태조사를 추진하고자 하오니, 시·도에서는 시·군·구 수요를 종합하여 붙임 2 양식을 9.5일(화)까지 기일 엄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소당 조사비 : 500,000원(국비 250,000, 지방비 250,000)

28) “25년 급경사지 실태조사 대상지 수요 조사 제출” 서울시 산지방재과-2396(2024.8.27.)

2) 『품질시험소』

(1) 품질시험장비 구입(사업별설명서 P.122)

- 동 사업은 노후 장비 교체와 신규 장비의 도입을 통해 품질시험소의 시험능률을 향상하여 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강화코자 하는 사업으로, 금회 전년대비 5억 5,399만원(6,457%)이 증가한 5억 6,257만원을 편성하였음.
- 서울시 품질시험소는 「건설기술 진흥법」²⁹⁾ 및 「국가표준기본법」³⁰⁾에 따라 품질검사를 수행하는 공인 시험기관인데 현재 사용 중인 시험 장비 상당수가 내구연한을 초과([표] 참조)하여 노후율 33.19%로 교체가 시급한 상황이며,

[표] 품질시험소 내구연한 경과 시험장비 현황

구 분	계	토질재료	화학	비 고
합 계	238	144	94	
내구연한 이내	159	104	55	
내구연한 경과	79(33.19%)	40(27.78%)	39(41.49%)	

- 이를 개선코자 ‘시험장비관리 5개년 계획(2025~2029)’([표] 참조)을 수립하고, 노후 장비 교체를 위해 금회 시험장비 구

29)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품질검사의 대행 등) ①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62조제15항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하여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하여야 한다.

30)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시험·검사기관 인정 등) ① 정부는 제21조에 따른 적합성평가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시험·검사기관 인정제도의 선진화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험·검사기관 인정제도의 확립에 필요한 인정기구와 운영기관의 지정, 인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매비용 4억 7,957만원을 편성한 것임.

[표] 시험장비 관리 5개년 계획('25년~'29년)

☐ 추진 개요

- 관련근거 : 「건설기술진흥법」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3조, 「계량에 관한 법률」제25조 (수리한 계량기의 재검정)
- 사업기간 : 2025. 1. ~ 2029. 12.(5개년)

☐ 추진방향

- 시험 결과의 정확도 향상 및 시험 능력 제고를 위해 최신 장비 확보
 - 장비 내구연한 경과 시 교체하는 것을 원칙
 - 장비 상태(양호, 불량)에 따라 교체 시기를 조정
- 유사시에도 시험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가급적 대체장비 확보
 - 대체장비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장비를 활용하여 예비로 확보 원칙
 - 시험 항목 추가 및 시험량 증가 등의 경우 장비 추가 확보

☐ 연도별 시험장비 구매 계획

(단위: 대/천원)

구 분	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계	47대	12대	12대	10대	8대	5대
	1,541,429	659,400	289,505	261,792	109,437	221,295
토 질 재 료 시 험 과	25대	3대	5대	8대	5대	4대
	965,007	257,550	200,058	225,565	74,948	206,886
화 학 시 험 과	22대	9대	7대	2대	3대	1대
	576,422	401,850	89,447	36,227	34,489	14,409

☐ 행정사항

- 내구연한 경과 장비 등 시험장비의 상시적 기능유지를 위한 장비 점검 및 정비 시행
 - 향후 잦은 고장 등 장비의 가동상태 등을 감안하여 확충 계획 조정
- 시험장비 관리 및 확충에 소요되는 예산 연차별 반영

- 여기에 덧붙여, 「계량에 관한 법률」 제25조³¹⁾에 따라 서울시 품질시험소는 전기차 충전기의 재검정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어 전기차 보급 및 충전기 설치 수요 확대에 대비해 검정 장비를 확보([표] 참조)하고 수리재검정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에 해당함.

31) 「계량에 관한 법률」 제25조(수리한 계량기의 재검정) ① 제24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정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또는 정기검사 기일이 되기 전에 수리한 계량기를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재검정을 받아야 한다.
1. 제26조에 따른 검정기관
2. 검정요원, 검정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방자치단체

[표] 전기자동차 충전기 이동형 검정장비 구매 계획

구 분	내 용
시험가능 충전기 커넥터	TYPE1(AC완속), CCS1(콤보1) - 서울시 전체 충전기 중 교류단상(AC완속), 직류(DC콤보) 형태가 98.3%를 차지하며, DC콤보1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통일화된 급속 충전방식으로 '17년 12월 고시하였음.
오차시험 방법	현장검정 시, 실제 차량과 전기차 충전을 이용하여, <u>시험장치</u>에서 측정한 <u>전기차 누적 전력량</u>과 디스플레이에 표시된 <u>충전기 누적 전력량</u>을 비교하여 오차율 계산 
구성품	시험장치, 연결케이블, 프로그램 디바이스 등 ※ 전기자동차(별도)
소요예산	8,300만원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금회 동 사업을 통해 품질시험 장비에 대한 보강 및 노후장비에 대한 교체가 추진된다면 2025년도는 노후율이 약 30%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다. 명시이월 ([붙임 1] 조서 참조)

- 금회 건설기술정책관 소관 명시이월은 총 1개 사업으로 규모는 1억 95만원이며, 세부 내역은 [붙임 1]와 같음.
- 명시이월 사업인 ‘민간건설현장 동영상 기록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은 서울시의 「부실공사 Zero 서울」 추진계획³²⁾에 따라 민간건축공사장에 동영상 기록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시공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금회 예산편성액 1억 95만원 전액을 명시이월하려고 있음.
- 이는 동 사업이 '24.6월 추경으로 편성된 이후 사전 검토 및 용역 발주 절차에 상당 기간을 소요('24.10월 완료)한바, 과업기간(8개월)을 고려할 때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하려는 것으로,
 - 추경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예산 집행 기간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에도, 사전절차 이행에 소요되는 기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한 점은 결과적으로 이월을 전제로 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됨으로 지양되어야 할 것임.

32) 「부실공사 Zero 서울」 추진 계획 (시장 방침-143호, '23. 11. 24.)

[붙임1]

명시이월사업조서

☐ 건설기술정책관

○ 일반회계(1개 사업, 100,946천원)

(단위 : 천원)

연 번	정 책 사 업	단 위 사 업	세 부 사 업	명 시 이 월 내 용	통 계 목	예 산 액	이 월 액	사 유
1	건축물 예방적 안전 관리 강화	민간 건축물 안전관리	민간건설 현장 동영상 기록관리 정보 시스템 구축	○ 민간건설현장 동영상 기록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 기간 : 2024. 11.~2025. 6. - 내용 :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정보화시스템 연계를 통한 기능개선으로 시스템 구축 등	계	100,946	100,946	용역 발주 사전절차 이행에 기간이 소요되어 입찰공고 전으로 과업기간을 고려할 때 연내 집행이 어렵고, 유찰 등 고려 시 명시이월 필요
					(20702) 전산개발비	100,946	100,946	